**일반사모형 집합투자기구 설명서**

**XX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8호**

|  |
| --- |
| ❖ 이 설명서는 투자광고⋅홍보 자료가 아니며, 전문사모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과 위험을 정확히 알려 투자자의 현명한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은어(jargon)의 사용을 최대한 지양하며, 투자자의 이해⋅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분량은 5쪽 내외로 작성하였으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판매직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1. 기본 정보**

|  |  |  |  |  |  |
| --- | --- | --- | --- | --- | --- |
| 펀드명 | XX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8호 | | | | |
| 운용사 위험도 | 1등급(매우 높은 위험)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  | |
| 펀드 종류 | 투자신탁 / 증권형 / 개방형 / 추가형 / 일반사모집합기구 | | | | |
| 가입자격 | 전문투자자로서 자본시장법(이하 법) 시행령 제271조 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 | 최소투자금액 | | * 일반투자자:5억원 이상 * 전문타자자: 최소투자금액 없음 | |
| 신탁계약기간 | 설정일 ~ 2024년 5월 19일 | 레버리지(차입 등) 한도 | | 200% | |
| 판매일정 | 2021년 5월 20일 | | | | |
| 환매일정 | 일정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환매 청구 가능   1. 환매가격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후에 환매 청구시 제4영업일)에 기준가격으로 한다. 2. 환매 대금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제6영업일)에 판매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 | | | |
| 결산 및 이익분배 | 1. 회계기간: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 2. 이익분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은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 | | | | |
| 투자소득의 과세 | 1.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수익 중 과세대상 수익은 신탁기간 종료일, 이익분배금 지급일, 환매일에 원천징수 함. 2. 개인, 일반 법인 : 소득의 15.4% (지방소득세 포함) | | | | |
| 자산운용회사 | XX자산운용 주식회사  02-786-7867 | | 판매회사 | | 한국포스증권 |
| 수탁회사 | NH투자증권 | | 사무관리회사 | | 한국펀드파트너스 |
| 원금손실발생여부 | 이 집합투자증권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 |
| 가입시 유의사항 | 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설명자료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설명자료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신탁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설명자료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⑤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서 또는 설명자료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신탁계약서, 설명자료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 | | |

**2. 상품의 내용**

|  |
| --- |
| □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서 채권 및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 한도  이 투자신탁은 규약집 제15조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법령이 정한 한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대상자산의 취득한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면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대상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국내 신용평가등급 A(-)이상이어야 하고, 후순위채권, 주식관련사채권을 포함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채권”이라 합니다)  ②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빛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를 포함한다)(이하 “주식”이라 합니다)  ③ 이 투자신탁은 제2항의 “공모주식” 투자에 있어 의무보유 확약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④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

**2-1여유자금의 운용방법**

|  |
| --- |
|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합니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인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법 시행령 제 268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2-2중층/복층 투자구조(타집합투자증권의 편입)**

|  |
| --- |
| □ 현재 보유 중은 아니지만 향후 투자자산으로서 편입할 수 있는 투자신탁입니다.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신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 산정 방법**

|  |  |
| --- | --- |
|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평가일 현재 신뢰 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과 충실의무, 평가의 일관성 유지 등을 준수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당일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자로만 이루어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아니한다. | |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장내파생상품 |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으로 평가 |
| 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

**3. 투자위험**

□ **위험도 및 위험요소**

|  |  |
| --- | --- |
|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개별위험 | 이 투자신탁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의 투자대상종목 발행사의 신용등급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 사건 발생시 투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유동성  위험 | 전문사모펀드가 투자하는 자산은 수행하는 전략별로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는 유동성위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하이일드채권  투자위험 | 하이일드채권은 투자적격 채권에 비해 높은 이자율(수익률)을 제공하는 반면, 재무상황악화,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일드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한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해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아울러 채권의 이자와 원금 등에 대한 회수완료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채권 등은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에서 매각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할 수 없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 공모주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공모주는 시장에 처음 상장되는 종목으로서 기존 상장 주식보다 큰 가격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매도금지 규정에 따른 환금성 제약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펀드 비용(수수료⋅보수)**

□ **펀드보수**

|  |  |
| --- | --- |
| 클래스 | 없음 |
| 보수  (연, %) | 총 보수 : 1.28  운용 : 1.00  판매 : 0.15  신탁 : 0.10  사무관리: 0.03 |
| 선취수수료 | 적용 없음 |

|  |
| --- |
| □ **펀드보수(성과보수)**   1. 지급기준 : 성과보수 차감 전 투자신탁 운용수익률(성과보수를 제외한 모든 비용이 차감된 이후의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2. 지급금액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신탁 이익금의 **15%** 3. 기준수익률 : 연 **7%**(연환산 수익률)   \* 상세내역은 집합투자규약 제35조의2(성과보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비용: 약 연 0.35%**   1. 상기 비용은 증권거래비용, 금융비용 및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연환산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보수 및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3. 펀드보수 및 펀드비용은 순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만기 또는 환매시점까지 부과되며, 투자자의 최종 실현수익률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성과에서 지급하게 되는 총 보수 및 비용만큼 차감되어 결정됩니다. |

**5. 환매에 관한 사항**

|  |  |
| --- | --- |
| 구분 | 내용 |
| 환매 절차 | 수익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환매 방법 | 1. 환매가격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후에 환매 청구시 제4영업일)에 기준가격으로 한다. 2. 환매대금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제6영업일)에 판매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
| 환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없음. 단, 설정 후 90일 미만에 환매 청구 시 이익금의 70% |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  |
| --- |
|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자로만 이루어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 투자자께서는 동 상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에 대한 상기 설명서의 내용과 주요 사항, 위험요소를 **모두 확인 하였음.**

본 상품에 대한 상기 설명서의 내용과 주요 사항, 위험요소를 **모두 확인 하였음.**

**■ 고객확인란**

|  |  |
| --- | --- |
| **계좌번호** |  |
| **고객명(본인명)** | **서명 또는 (인)** |

년 월 일